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관리과-8555
등록일자	2016.4.7.
결재일자	2016.4.7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세외수입팀장	세무관리과장	기획경제국장		
신동원	윤미경	송필석	04/07 김용운		
협조자	38체납기동대TF팀 장 성기환				

지난년도 시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징수 특별계획

체납징수계획

- 추진시기 : 2016. 4. 10. ~ 2016. 12. 31.
- 체납징수 추진 목표 : 5억3천만원(서울시 총 체납액의 20%)
- 2015년 체납·징수현황(2016.2월말현재) (단위: 건, 백만원)

구 분	부과액		징수액		결손처분액		체납액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1,035	5,676	13	31	100	1,116	922	4,529
임대료	9	17	2	-			7	17
변상금(시)	1,026	3,343	11	19	100	669	915	2,655
변상금(구)		2,316		12		447		1,857

※ 변상금 배분 비율 (시 - 60% , 구 - 40%)

추진내용

-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체납고지·안내로 납부촉구
- 체납징수전담반운영으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방지

문제점

- 우리구 변상금 체납은 수정마을(43세대), 재건마을(63가구)등 무허가 판자촌에 부과된 건으로 장기, 고질적 민원이며, 소유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되는 실정임

행정사항

- 변상금 등 자체 체납징수 대책 수립 및 서울시 제출(2016.4)
- 체납징수 특별계획 추진실적 집계 및 서울시 제출(2016.12)

강 남 구
(세 무 관 리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2항, 10항 • 강남구 과징부서평가에 관한 규정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경위 : 2016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남구 재정 확충
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]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O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O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O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사항 없음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사항 없음

2016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징수 특별계획

시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·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2016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1 시유재산 체납현황

□ 시유재산 체납액 : 총 45억원

○ 2015년 체납징수현황

(2016.2월말 현재)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부과액		징수액		결손처분액 등		체납액		납기미도래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1,035	5,676	13	31	100	1,116	922	4,529		
임대료	9	17	2	-			7	17		
변상금(시)	1,026	3,343	11	19	100	669	915	2,655		
변상금(구)		2,316		12		447		1,857		

※ 변상금 배분 비율 (시 - 60% , 구 - 40%)

○ 부서별 체납현황

(2016.2월말 현재)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	임대료		변상금	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시세 금액	구세 금액
총계	922	4,529	7	17	915	2,655	1,857
재무과	6	119	2	13	4	16	90
건설관리과	5	4	5	4			
도시선진화담당관	911	4,406			911	2,639	1,767

○ 연도별 체납현황

(2016.2월말 현재)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	임대료		변상금	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시세 금액	구세 금액
계	922	4,529	7	17	915	2,655	1,857
최근 5년간	소계	476	1,968		476	1,181	787
	2016				-	-	-
	2015	121	304			121	182
	2014	136	493			136	296
	2013	145	376			145	226
	2012	74	795			74	477
2011 이전	446	2,561	7	17	439	1,474	1,070

※ 2016.4월 변상금 106가구 241백만원 부과 예정

2 시유재산 체납액 실태분석

□ 변상금 실태분석

○ 현황 및 문제점

우리구 변상금 체납은 수정마을(43가구), 재건마을(63가구) 등 무허가 판자촌에 부과된 것으로, 2011년 이전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4,529백만원의 56.5%인 2,561백만원으로 매년 장기·고질적 민원이 다수이며 압류할 재산이 없어 시효결손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

○ 연도별 시효결손 현황

(단위 : 건, 백만원)

항목	합계		2013년		2014년		2015년		2016년3월기준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변상금	433	2,947	72	382	72	376	81	470	208	1,719

3 시유재산 체납징수 특별대책

□ 추진목표

○ 체납금 징수목표 : 5억3천만원(서울시 총 체납액의 20%)

- 경제전망 및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'15년과 동일한 20%로 설정

□ 추진방향

-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로 예금 등 유·무재산 채권확보
-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▶ 현장중심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
- 체납고지서·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으로 체납금 납부 독려
-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

□ 체납징수 세부 추진단계

1)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

- 추진기간 : 2016. 4.10. ~ 2016. 4. 30.
- 추진방법
 - ①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체납자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일치여부 확인(성명,주소,주민등록번호,법인번호 등)
 - ② 개명,주소변경 등으로 체납자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과등록 당시 납세자 정보를 착오로 입력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자료 수정·정비
☞ 세외수입징수시스템 -> 총괄과세조회 -> 체납자조회 -> 수정/삭제

2) 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

- 추진기간 : 2016.5월 ~ 10월중 3회 발송
- 추진방법
 - ① 장기·고액체납자는 체납고지서에 납부 촉구 안내문을 동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체납독려
 - ②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전담반을 활용하여 연중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납부독려

3)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

- 추진기간 : 2016. 6.1. ~ 2016. 10. 31.

○ 추진방법

- ①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일제 압류조치 실시로 신속한 채권확보

4)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

- 추진기간 : 2016. 6.1. ~ 2016. 12. 31.

○ 추진방법

-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는 신속하게 시효결손 처분
②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 사실상 체납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
③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서 시효결손, 불납결손 대상을 조회하여 결손일자, 결손사유를 입력한 후 결손처리

☞ 세외수입징수시스템 -> 지역서비스 -> 결손관리 -> 결손(시효/불납)등록

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대책

- 추진기간 : 2016. 5.1. ~ 2016. 12. 31.

○ 추진방법

- ① 현장중심 체납징수전담반 본격가동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
② 강력한 행정제재 -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분석 후 부동산 공매 등 강력 대응

4 행정사항

- 변상금 등 자체 체납징수 대책 수립 및 서울시 제출 : 2016.4.8
○ 체납징수 특별계획 추진실적 집계 및 서울시 제출
- 체납금 징수실적 중간제출 : 2016.10. 3.
- 체납금 징수실적 최종제출 : 2016.12.19.